

대 법 원

2004. 2. 27. 원본영수	인
200 . . . 판결상달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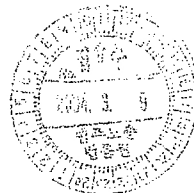
제 3 부

판 결

사 건 2003두13601 부당해고구제심판정취소
 원고, 상고인 정국정
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94-35 상옥 205호
 소송대리인 변호사
 피고,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
 소송수행자
 피고보조참가인 엘지전자 주식회사
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0
 대표이사
 소송대리인
 담당변호사
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3. 10. 24. 선고 2002누13910 판결

주 문

상고를 기각한다.
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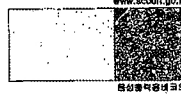


이 유

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,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,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판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2004. 2. 27.

재판장 대법관 고현철 _____
 대법관 _____
 주 심 대법관 _____
 대법관 _____



대 법 원

제 2 부

판 결

정본입니다.

2011. 3. 24.

법원주사보 함 영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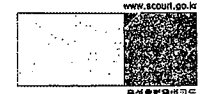
사 건 2010다21962 해고등무효확인
 원고, 피상고인 정국정
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94-35 상옥빌딩 205호
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90-49 한진 501호
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정훈

피고, 상고인 엘지전자 주식회사
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0
 대표이사
 소송대리인 [REDACTED]
 담당변호사 고현철, [REDACTED]

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0. 2. 5. 선고 2007나49139 판결
 판 결 선 고 2011. 3. 24.

주 문

원심판결을 파기하고,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.



이 유

상고이유를 본다.

1.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

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에 대하여 구제명령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므로(대법원 1992. 5. 22. 선고 91다22100 판결 등 참조), 설령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, 이는 재심판정이 적법하여 사용자가 구제명령에 따른 공법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정하는 것일 뿐 해고가 유효하다거나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사법상 법률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어서, 근로자는 그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.

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,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.

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대법원 1992. 7. 28. 선고 92누2099 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.

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과 해고무효 확인소송의 관계 및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.

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2.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

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,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, 이 사건 해고사유 중 원고가 ① 승진과 관